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전익항공기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1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9.
3.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회전익항공기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u>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u> 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 <u>장교</u> ----- ----- ----- --- <u>취득한 사람</u> ----- ----- ----- <u>졸업한 사람</u>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	5. -----

으로 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u>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6.·7. (생략) ② ~ ⑥ (생략)	----- . ----<u>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13년으로 하고,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6.·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상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고정익항공기 비행자격 취득 장교의 경우 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그 외는 1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 회전익항공기 비행자격 취득 장교는 일반 장기복무 장교와 동일하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준사관의 경우에도 항공운항준사관은 군 필수기술 분야 종사자로 분류되어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고 있음¹⁾.

-
- 1)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정밀 화력 지원, 전투수색구조 및 특수작전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수년의 교육·훈련과 대규모 국가 예산이 소요됨.

그러나 장교의 경우 임관 10년차 전역인원이 육군 43명, 해군 13명에 달하며, 준사관의 경우에도 임관 10년차를 전후하여 전역이 집중되는 경향²⁾이 있어, 숙련 조종사가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회전익항공기 비행자격 취득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 재정 투입 대비 인력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숙련 조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최근 3개년 회전익항공기 장교의 임관연차별 평균 전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임관 10년차	43	13	0	0
임관 11년차	17	8	0	0
임관 12년차	10	4	0	0
임관 13년차	8	0	1	2

[최근 3개년 회전익항공기 준사관의 임관연차별 평균 전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임관10년차	11	0	0	0
임관11년차	7	0	0	0
임관12년차	2	0	0	0
임관13년차	3	0	0	0

자료: 국방부

□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준사관의 경우 육군은 최근 3개년 평균 운영률이 86.4% 수준인 반면, 해병대는 평균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 이와 같은 인력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회전익항공기 조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숙련인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회전익조종사 양성과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조종사 양성에는 평균 8년 7개월의 기간과 1인당 약 4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행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의 교육훈련 및 국가 재정 투입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인력 활용기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최근 3개년 회전익항공기 장교 인력운영 현황] (단위 : %)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대위	소령	대위	소령	대위	소령	대위	소령
2023년	95.4	95.0	86.6		93.0	107.9	65	104
2024년	93.2	99.0	101.2		97.0	100.1	59	87
2025년	92.7	89.5	103.6		96.5	95.1	55	73
평 균	93.8	94.5	97.1		95.5	101.1	60	87

* 계급별 정원대비 운영인력 기준이 아닌 「해군부대 편성 및 병력책정 기준서」에 의거 소령 이하 적정 정조종사(82명)에 대한 복무비율로 산정

[최근 3개년 회전익항공기 준사관 인력운영 현황] (단위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육 군	84.6	86.5	88.2	86.4
해병대	50.0	54.5	52.3	52.3

자료: 국방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의무복무기간 연장은 숙련 조종인력의 활용기간 확대라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회전익조종사 지원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장기적으로는 신규 조종인력 유입 감소를 초래하여 전체 조종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수당체계 개선, 복무여건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하는 부처간 동일 경력 조종사를 비교할 경우, 군 조종사는 타 부처에 비해 비행횟수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보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의무복무기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신규 인력 유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15년차 경력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연간 비행횟수 및 평균 연봉]

(단위: 회, 만원)

구분	육군	산립청	소방청	경찰청
연간 비행횟수	204~240	72~84	48~60	24~36
연봉	7,935	9,452	8,234	7,994

주: 2025년 기준 자료

자료: 국방부

둘째,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무복무기간의 연장은 개인에게 추가적인 복무의무를 부담시키는

침익적 성격의 규율인 바, 개정안 부칙에서는 법 시행 이후 임용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⁴⁾ 현재 회전익항공기 비행훈련과정 지원을 준비 중인 사람의 경우 개정된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단기간 내 적용되어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는 기존 규정에서 해군·공군 장교에 한정 되어 있던 의무복무기간 적용대상을 육군·해병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의무복무 대상은 여전히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군 및 해병대의 경우 고정익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관학교를 열거하기보다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문의 명확성·간결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전익항공기 장교 및 비행자격 취득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 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육군사 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전익항공기 기종의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u>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u>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u>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u> 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u>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u> 중 <u>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u>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u>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u> [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 상향에 따른 부담으로 조종사 지원을 감소 등이 우려될 수 있으나, 숙련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내 숙련 조종인력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육군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대하여 숙련 조종인력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현재 인력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복무기간

연장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해군 및 해병대는 최근 조종인력 유출 증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함께 각종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이 병행될 경우 인력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다만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공군은 숙련 조종인력의 유출 방지 및 조종인력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